

「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3. 6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2. 제안이유

-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,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(안 제5조)
- 1회용품 사용억제(안 제6조)
- 재활용 홍보 및 교육(안 제7조)
- 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청소, 생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,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 구역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제6조제4항에서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(무인회수기를 포함)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,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에서 「평창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규정함.

- 안 제6조(1회용품 사용 억제)에서 군 및 공단, 출연기관,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급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것을 규정함.
- 안 제7조(재활용 홍보 및 교육)에서 관내 재활용 선별장 견학 및 체험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·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, 주민 등에게 재활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때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8조(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)에서 자원순환 촉진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및 현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선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,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과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고, 지자체 사무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**관계 법령**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 7. (생략)

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

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

제6조(분리수거용기의 설치·관리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·보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·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, 배출품목·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, 유리병 전용봉투,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(무인회수기를 포함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붙임 참고 자료

□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[2023.5.19] 외 89건

(관내 : 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, 속초시, 홍천군)